2025년 금융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금융 혁신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북 혁신도시 '금융혁신 공유오피스' 창업 공간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5년 1월 3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2025 금융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운영사업
- 공 고 명: 2025 금융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 모집대상: 금융(핀테크,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ICT 등) 및 자산운용 분야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 아이템을 보유하거나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를 활용(예정)중인 (예비)창업기업
 - * 공고일로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
- ** 타 지역 기업은 선정 후 3개월 이내 본점의 전북 이전 또는 지사 및 연구소 설립 가능기업
- *** 예비창업자는 입주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완료 필요
- **** 전북소재 기업(본점 이전 예정기업 포함) 및 금융혁신기업 우선 지원 예정
 - 모집기간: 2025. 1. 3.(금) ~ 1. 15.(수) 18:00까지
 - 모집규모: 총 5개사(2인실(13㎡) 3개사, 4인실(21㎡, 22㎡) 각 1개사)
 - 지원내용
 - 입주공간 사무용 가구 및 공용공간(회의실, 라운지 등) 이용 지원
 - 입주공간 임차료 최대 80% 지원
 - 입주기업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 지원 등
 - 테스트베드(시험검증용 태블릿 등) 이용 지원

2 신청자격

- □ 모집대상: 금융혁신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 금융(핀테크,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ICT 등) 및 자산운용 분야 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 아이템을 보유하거나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를 활용(예정)중인 (예비)창업기업
 -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 ** 타 지역 기업은 선정 후 3개월 이내 본점의 전북 이전 또는 지사 및 연구소 설립 가능기업
 - *** 예비창업자는 입주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완료 필요
- **** 전북소재 기업(본점 이전 예정기업 포함) 및 금융혁신기업 우선 지원 예정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의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 신청제외대상

※ <u>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u>

- 현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정부기관 창업보육센터, 공유오피스 입주기업(대표자)
 - * 단, 입주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퇴소예정 기업(대표자) 제외 : 현재 입주중인 보육센터, 공유오피스 계약기간이 명시된 입주계약서 증빙 필요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舊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 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조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 기타 창업보육실 운영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입주지원

□ 입주공간

○ 명 칭: 금융혁신 공유오피스(FINSO)

○ 주 소: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3-6(DY빌딩) 5층

○ 입지여건: 금융분야 협력기관 접근용이(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금융빅데이터 센터, 금융타운조성(예정) 등)

 주변환경: 전북테크비즈센터,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수산 대학,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진 흥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과 근접

○ 공간현황: 전용면적 513.71㎡, 개별 사무공간 10개실 보유

구분	전용면적	공간 수
2인실	13~14m²	4개실
4인실	21~22m²	5개실
6인실	35m²	1개실

ㅇ 공간모습



□ 지원내용

- 입주공간 사무용 가구 및 공용공간(회의실, 라운지 등) 이용 지원
- 임차료 지원: 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 계약기간 내 지원(최대 3년*)
- 기업수요 맞춤형 멘토링 및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테스트베드(시험검증용 태블릿 등) 이용 지원
- 센터 금융혁신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연계 및 선정 시 가점 부여
 -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핀테크 분야)
 - 금융혁신 빅데이터 스타트업(금융 빅데이터 분야)
-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전북테크비즈센터 6층) 교육신청 시 우선 신청

□ 입주기간

- 입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입주기업 연장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입주 지원(최대 추가 2년)

-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공실 발생 시 센터 상황에 따라 수시 모집
- 선정 통보일 기준 1개월 이내 미입주 시 입주자격 취소

□ 입주비용

- 임차료는 연장심사를 통해 선정 시 최대 2년 추가 지원
- 단, 과도한 수도광열비 사용 시 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공유오피스 입주비용 》

(부가세 제외)

구분	전용면적	임차료 (100%)	입주 지원금 (80%)	기업 부담금 (20%)	관리비
الحال	13m²	600,000원	480,000원	120,000원	50,000원
2인실	14m²	610,000원	112,000원	122,000원	50,000원
40181	21 m²	800,000원	640,000원	160,000원	100,000원
4인실	22m²	810,000원	648,000원	162,000원	100,000원
6인실	35m²	1,000,000원	800,000원	200,000원	150,000원

- 센터 임차료 지원은 임차료의 80% 지원 예정
- 임차료의 20%와 관리비는 입주기업 자부담
- 기업 부담금 및 관리비는 부가세 10%와 함께 청구 예정

4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방법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 신청
 - 온라인 신청 플랫폼: https://event.jbci.or.kr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로 통합 또는 폴더로 압축하여 제출
- 문의: 오픈이노베이션팀(063-220-8992~8993)

□ 제출서류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필수	20매 이내 작성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분		증빙서류	필수여부	비고
1	■대표자 신	분증		-
	■ 개인 ② ·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이력 있을 시)	필수	
2	■법인 ② ③	사업자등록증(계속 사업 모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폐업 이력 있을 시)		-
3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4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2024년도
5	■ 실적자료([[]	개출, 수출, 투자, 고용 등)	선택	해당자
6	■ 기타자료(2	지식재산권, 벤처기업확인서 등)	선택	해당자

□ 선정절차

○ 세부일정

공고 및 모집	_	서류·면접심사	_	선정결과 안내
'25. 1. 3.(금) ~ 1. 15.(수)		'25. 1. 16.(목)		'24. 1. 17.(금)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입주기업 선정

구분	내용
운영방식	· 입주 목적, 사업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 위주의 평가 · 평가위원 5명 이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후 평가 시행 · 서류평가 후 최종 선정 인원에 대한 2차 면접심사
심사내용	· 대표자 역량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심층평가 - 대표자 역량평가 : 창업자의 의지와 준비성, 전문성, 창업사업 수행의 인성적 요소 평가를 위해 시행 - 사업화 가능성평가 :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발표평가 자료를 작성 - 기업별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입주계약서 작성 및 입주를 위한 준비사항 개별 안내

□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입주계약 체결: '25. 1월 중

○ 입주개시: '25. 1월 중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접수 시 접수처와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귀
 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
-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신청서와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주를 무효로 하며, 입주 후에도 입주 취소 및 퇴실될 수 있음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
 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지원 프로그램(교육 및 멘토링)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관련 사항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유오피스 운영지침에 준함 끝.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 창업여부 기준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증여 개인 / 법인		기존의 개인사업자 유지	동종유지			불인정		
3759	기인/답인	또는 폐업 여부 무관		이종	창업	창	업	
		기원	돈 개인사업	자 유지		불인정		
				이종	창업	창	업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동종창업	폐	업 3년 초과	창	업	
	/ 개인기립 		공동성립	부도	/파산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	인정	
창업이력 있음			0001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	업	
ж п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	업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폐업 3년 초과	창	업	
				경우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동일		인이 아닌 경우	창	업	
		기조 버이 나이지 오기	자회사 해당			불인	인정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 1.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란 사업자등록을 반납 또는 취소 조치함을 말함
- 2.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달리하고 당해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
- 3.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 가. 법안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 4.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 5. "자회사" 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 6. 중소기업 폐업이후 3년 이후의 동종 업종 개시는 창업 인정(부도·파산 2년)
- 7.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참고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